

# 예 산 총 칙

2016년도 추경 3 회

제 1 조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612,857,367	18,385,721
일반회계	566,765,293	17,002,959
특별회계	46,092,074	1,382,762
공기업특별회계	38,021,581	1,140,647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3,018,908	690,567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5,002,673	450,080
기타특별회계	8,070,493	242,115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1,931,704	57,951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	1,840,548	55,216
주민소득사업 특별회계	1,777,845	53,335
신정지구개발사업 특별회계	2,078,443	62,353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441,953	13,259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2016년 채무부담 행위는 [해당없음]으로 한다.

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1,359,267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13,500,000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 사업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